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24호 2020. 6.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9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94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59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566호 새천년해안 셋바람길(숲길) 조성계획 의견수렴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571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5
- 삼척시 공고 제572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576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오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1
- 삼척시 공고 제583호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0 - 9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06-3 (오분동) 외 3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2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06-3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2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06-5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106-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92-71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88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2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3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2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4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14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1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6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1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2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16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189-3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17-19 (원당동)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법정동 명칭(원당동) 활용
19	강원도 삼척시 교동 17-2	강원도 삼척시 광진길 180-1 (교동)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지역지명(광진)활용 (기존도로명)
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83-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61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덕산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2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4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1길 30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지역명사용
22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9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3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29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4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67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5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68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6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0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7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1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8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3-4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29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6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30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4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31	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119 (오분동)		20200612	철폐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2	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135 (오분동)		20200612	철폐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8		20200612	철폐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임원안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계	33 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06-3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06-5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탐곡리 106-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92-71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88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2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3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2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4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14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1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6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17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20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폐지	1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6-16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부여	18	강원도 삼척시 원덕동 189-3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17-19 (원당동)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법정동 명칭(원당동) 활용	
부여	19	강원도 삼척시 교동 17-2	강원도 삼척시 광진길 180-1 (교동)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지역지명(광진)활용(근도로명)	
부여	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83-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61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덕산)길분기)	
부여	2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길남리 44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1길 30	20200612	건물 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지역명)사용	
폐지	22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9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오분)길분기	
폐지	23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29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오분)길분기	
폐지	24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67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오분)길분기	

페이지	25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68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26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0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27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1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28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3-4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29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6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30	강원도 삼척시 오분2길 74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페이지	31	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119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페이지	32	강원도 삼척시 오분길 135 (오분동)		20200612	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페이지	3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8		20200612	철거	20090626	입면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삼척시 고시 제2020 - 9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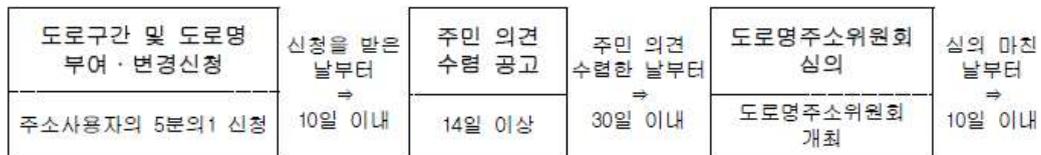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2.

삼척시장

- 고시일 : 2020. 6. 12.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변경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 절차



<변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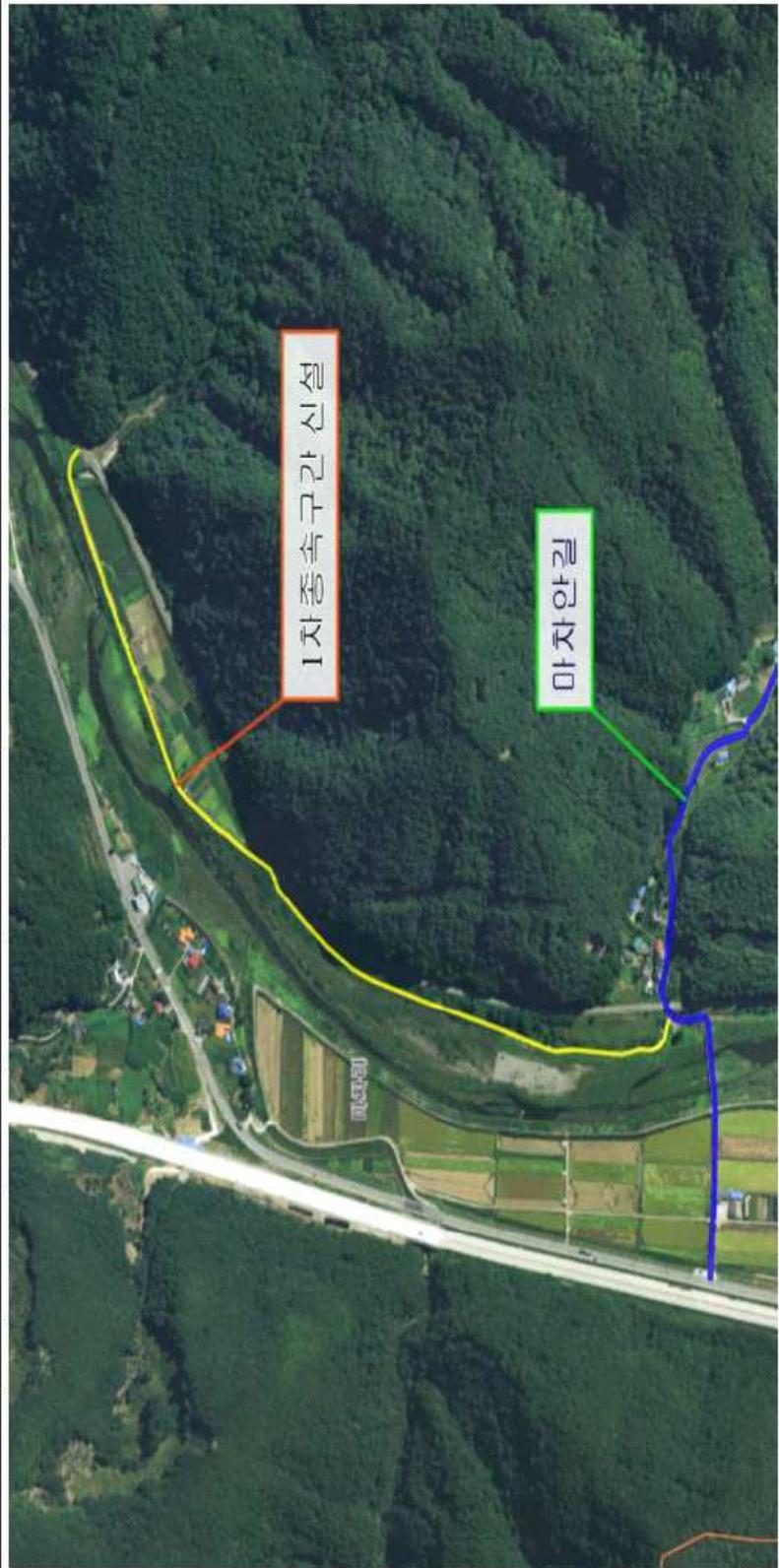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마차안길 (1차종속구간)	도로 위계 길	관할행정 구역 신기면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71-1→ 71-122	동 일 도로명 없음	변경 사유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도로 신설
				시작지점 마차리 621	끝지점 마차리 산119-6	길이 (m) 1214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삼척시 공고 제2020-559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삼척시장

1. 열람목적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6. 12. ~ 2020. 6. 29.(17일간)

3.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 교동 산51번지 일원의 국도7호선에서 광진마을간 현 진입도로 이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해소 목적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남양동 7-1번지 일원(삼척시노인복지회관 주변)의 '삼척시 복합노인복지관' 신축목적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용생략"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및 입안도면(안) 게재

6.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삼척시장(도시과장)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 또는 건설과(☎033-570-3488), 사회복지과(☎033-57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0 - 566호

새천년해안 셋바람길(숲길) 조성계획 의견수렴 공고

새천년해안 셋바람길(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

삼척시장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거 리
새천년해안 셋바람길 (숲길)	삼척시 정하동 산3-1(셋바람길 1공구중 일부)	308m

2. 지정목적 : 숲길체험, 등산 등 산림 내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지정기간 : 2020.6월(예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4. 사업내용 : 숲길 정비 및 조성관리

5. 소유자별 지번·지목 및 면적 : 붙임 편입토지조서 및 도면 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 면적 및 대상지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본 공고 기간 중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 여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내 편입필지 소유산주 중 소재지 불명, 우편물 반송 및 무응답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편입필지를 본 공고문에 포함 공고하니 해당 소유산주는 공고 기간 내 구술(또는 서면)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관광정책과(☎033-570-3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편입토지조서 1부
2. 예정노선 도면 1부. 끝.

구 간 별 편 입 조 서(새천년해안 셋바람길 1공구)

구간	사 업 예 정 지		지 적 (㎡)	편입거리 (m)	정비예상 면적(㎡)	설치 시설물	소유자						
	읍.면.동	리 지번											
1공구	정하동	산3-1	143,270	308	552.8	등산로 개설 308m(등산로폭 1.2m)	정연*,신명*,정대*강연*,김규*,권범*,김직*,권명*,박도*,김봉*,박한*,옥인*,남규*,김석*,한영*,김해*,홍학*,김진*,홍순*,방운*,서일*,김영*,김진*,김구*,최용*,최말*,김석*,김방*,김재*,김진*,김광*,이종*,이문*,이찬*,조용*,조영*,김동*,강수*,이주*,석성*,홍경*,홍재*,이상*,천화*,양경*,김형*,김장*,장중*,임태*,양순*,이호*,김동*,안순*,이호*,김동*,안순*,이호*,민남*,박준*,박성*,김용*,조인*,양명*,정인*,김용*,이성*,김명*,이호*,최정*,안신*,황정*,김만*,김신*,이동*,안순*,최정*,박신*,박진*,변영*,박병*,강홍*,변영*,이호*,최종*,김상*,서태*,김형*,최돈*,임장*,박동*,김학*,성길*,권해*,김재*,이정*,박금*,이성*,한경*,순두*,김춘*,이해*,김하*,박정*,이성*,최경*,고수*,박재*,백우*,최경*,최근*,권중*,이신*,김영*,정미*,박재*,장영*,김*,권말*,현성*,김영*,박완*,오금*,심금*,김양*,이원*,홍경*,박석*,박미*,장재*,이송*,노경*,오세*,서혜*,안원*,김유*,박선*,한복*,주중*,박재*,삼척시(총178명)						
						방향안내판 1개							
						야외탁자 2개소(1800*1800*760)							
						전망데크 1개소(8*3.93m)							
						주의및전망안내판 1개							
						안전로프고정구 4개소							
						안전로프난간 설치 20경간							
						목계단 설치 50경간							
						계				143,270	308	552.8	

삼척시 공고 제2020-571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삼척시장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고정된 융자이율 및 수수료를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3조)
- 나. 고정된 융자이율 변경(안 제9조)
 -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 다. 융자대행 금융기관 수수료 변경(안 제14조)
 - 수수료 상한액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0. 6. 9. ~ 6. 2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안전총괄부서
- 전화번호 : 033-570-3881, FAX : 033-570-3178
- 전자우편 : mijjeuru@korea.kr

5.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법정적립액)”을“(최저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한다.

제9조제2호 본문 중 “연리 4퍼센트로 하고”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상호협의를하여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법정적립액) 삼척시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최저적립액) ----- ----- <u>최저적립액</u>----- ----- ----- -----.</p>
<p>제9조(기금융자) 조례 제7조제 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용자이율은 연리 4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p>	<p>제9조(기금융자)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u> ----- ----- ----- ----- -----.</p>
<p>제14조(용자업무 위탁) ①·② (생략)</p> <p>③ 시장이 용자대행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u>용자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④ (생략)</p>	<p>제14조(용자업무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상호협의를</u> <u>여 정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붙임 2]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시행규칙 제명 :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0-572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삼척시장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 및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에 따라 정비
- 나.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안 제7조)
 -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 변경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 확대(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6. 9. ~ 6. 2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안전총괄부서
- 전화번호 : 033-570-3881, FAX : 033-570-3178
- 전자우편 : mijjeuru@korea.kr

5. 참고사항

이 시행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 중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

정적립액”을 “시장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법정적립액의”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로, “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를 “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무예치금액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을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며, 임차비용의”로, “70%이하”를 “70퍼센트 이하”로 “기금 규모”를 “용자 기금규모”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에 대한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3분”을 “2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p> <p>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p> <p>라.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p> <p>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p> <p>사.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p> <p>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p>	<p>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p> <p>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p> <p>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p> <p>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p>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체계) 구축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설치

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상시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긴급 재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다.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

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단,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①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용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④·⑤ (생략)

여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①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에 대한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 용자 기금규모-----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12명 ----- - 2분-----.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 1명 -----.

④·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 관리 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조례안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2020-576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오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2699(1974.07.19.)호 및 2015-102(2015.09.2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오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협의 등을 위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삼척시장

1. 사업의 위치 및 종류

- 가. 위치 : 오분동 산1번지 일원
- 나. 종류 : 오분공원(근린공원)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삼척시장
-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3. 사업의 규모

규 모		규모	토지내역	비 고
사 업 명	위 치			
오분공원(근린공원) 조성사업	오분동 일원	139,995㎡	오분동 산1번지 외 53필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3. 12. 31.

5.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20. 6. 12. ~ 2020. 6. 27.(15일간)
- 나. 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도시개발 부서 ☎033-570-344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불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권입면적 (m2)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총계				164,414	139,995			
1	오분동	산 1	임	1,488	1,488	삼척시 남양동3*8-3 백조아파트7-20*	김태*	
2	오분동	산 2	임	2,975	2,359	부산시해운대구중동176*해운대동일아파트10*-*03	심영*외 3명	
3	오분동	산 3	임	4,000	1,465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 생지리5*-5명성장면*차140*호	김철*외 3명	김*김지분 근저당 권설정
4	오분동	산 4	임	2,975	2,710	강원도삼척시진주로4*	김명*	
5	오분동	산 5	임	3,372	2,87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5*번길 4, 나동 20*호	김철*	근저당 권설정
6	오분동	산 6	임	2,975	2,298	삼척시오분동17*	권병*	
7		172	대	294	1			
8	오분동	산 7	임	496	154		산림청	
9		산 21-2	임	3	3			
10	오분동	산 8	임	4,463	3,87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공원로34*	박영*외 5명	
11	오분동	산 9	임	992	992	노곡면 상마읍리18*	김익*	
12	오분동	산 10	임	893	893	오분동 579	심지*	
13	오분동	산 11	임	694	694	용인시기흥읍보라리553민속마을쌍용아파트109-190*	심재*	
14		225	전	1,028	1,028			
15	오분동	산 12	임	36,000	36,000	강원도삼척시진주로4*	천일*외 1명	
16	오분동	산 13	임	12,893	12,053	오분동 18*	김재*	근저당 권설정
17	오분동	산 14-1	임	8,132	7,560	대전중구용두동9*-4극동늘푸른아파트105-90*	최복*	
18	오분동	산 14-2	임	496	496	태백시 황지동4*	이병*	
19		산 14-3	임	99	36			
20	오분동	산 14-4	임	3,121	2,246	오분동 17*	김성*	
21	오분동	산 14-5	임	1,733	798	오분동 17*	이상*	
22	오분동	산 18-1	임	5,355	5,009	서울시동대문구 신내동*95-4* 나10*호	김진*	
23		219	전	298	298			
24		221	전	311	311			
25		222	전	116	116			
26	오분동	223-1	전	694	694	서울시동대문구 신내동*95-4* 나10*호	김진*외 1인	
27		223-2	전	119	1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권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8	오분동	산 18-2	임	3,502	1,130	오분동 20*	이형*	
29	오분동	산 19	임	5,075	1,688	오분동 3*	심원*	
30	오분동	산 20	임	1,686	1,686	오분동 81*	이중*	
31	오분동	산 21	임	25,785	25,245	서울강동구성내동46*-3 강동구택2동10*호	진영*외 3명	
32	오분동	산 22	임	4,959	2,547	서울시금천구시흥동96*-1 4강호빌라가-20*	박미*외 1명	
33	오분동	177-6	대	541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 로 41*, 13층(대치동,*이 티앤지타워)	아시*신타 주식회사	근저당 권설정
34	오분동	206	전	4,270	127	삼척시 근덕면 표가길 2*	이완* 외 1명	
35	오분동	209	전	797	20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4-1* 강호빌라 가-*05	박미*	
36	오분동	210	전	1,841	1,841	강원도원주시루실로12*, 20*동 10*호(원동,원동아파트)	최완*	
37	오분동	211	전	1,686	1,686	강원도삼척시교동733-1코아 투아파트302-70*	진연*	근저당 권설정
38	오분동	212	전	1,213	593	오분동 21*	박춘*	
39	오분동	213-1	대	392	220	당저동24-4일국타운-30*	장석*	
40	오분동	214	전	1,798	1,798	경남장원시내동45*-9 내동아파트2-51*	김홍*	
41	오분동	215	전	579	579	오분동 2*	박상*	
42	오분동	216	전	2,347	2,347	오분동 23*	정태*	
43	오분동	217	전	1,167	1,167	오분동 6*	김백*	
44		226	전	539	539			
45		227	전	456	456			
46		230-2	전	681	681			
47	오분동	218	전	2,969	2,969	오분동 23*	심종*외 1인	
48	오분동	220	전	522	522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33*, *01호(성북동,명보*차아파트)	박영*	
49	오분동	224	전	1,961	1,961	삼척시 정석로 7*, 10*동 10*호(정상동,석미*아름아파 트)	신종*	
50		224-2	전	1,556	1,556			
51	오분동	224-1	전	405	405	오분동 17*	박종*	
52	오분동	228-3	대	43	1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3	오분동	230-1	전	1,660	1,660	삼척시 정석로 2*-11*(교동)	심영*	
54	오분동	231	전	661	661	미등기	-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0-583호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물구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나. 유물의 기증, 기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문화예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문화예술센터 시립박물관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성남동), 우편번호 : 25919

전화 : 033-570-4483, FAX : 033-575-0769

4.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 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계획 수립
2. 구입대상유물 및 절차 공고
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
5. 구입결정 유물 공개(7일간)
6. 매매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매도 명세서
3. 매도유물 사진(점당 각 1매)
4.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 약약서
5.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인 경우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감정조서

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등재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매도확약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매도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유물은 도굴 및 도난, 장물,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_____ 귀하

귀하께서 소장중인 소중한 유물을 삼척시 시립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소장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 유 물 명 :

· 수 량 : 건 점

년 월 일

삼 척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탁증서

_____ 귀하

귀하께서 소장중인 소중한 유물을 삼척시 시립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 유물명 : _____
- 수량 : 건 점
- 수탁기간 : . . . ~ . . .

년 월 일

삼척시장

[별지 제9호서식]

유물관리대장

유물번호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크기						
유물번호	특징						사진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유물번호	크기						사진
	특징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유물번호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사진
	크기						
	특징						
유물번호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크기						
유물번호	특징						사진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유물번호	크기						사진
	특징						
	명칭		수량	점	국적/시대	재질	
유물번호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원	출토(소)지		사진
	크기						
	특징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규칙 제명 :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의견제출자 :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